## KOSHA GUIDE

C - 48 - 2022

## 4.4 수송시 유의사항

- (1) 건설기계를 수송할 경우 일반적인 주의사항
  - (가)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트레일러 등 전용 운반기계로 수송하여야 한다.
  - (나) 건설기계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하여야다.
  - (다) 성토를 하여 건설기계를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    - ① 성토면의 폭은 건설기계의 폭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게 하여야 한다.
    - ② 성토면의 경사는 가능한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.
    - ③ 성토는 충분히 다져야 하며, 기계를 싣는 도중에 비탈면이 붕괴하여 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- (라) 발판을 이용하여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  - ① 발판은 기계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철제판을 사용하도록 하고 운반기계에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  - ② 기울기는 10°~15° 정도로 한다.
  - ③ 운반기계의 중심과 건설기계의 중심이 일치되게 하고 반드시 발판으로 오르내리게 한다.
  - ④ 발판은 건설기계가 오르내릴 때 휘어지지 않도록 각재 등으로 보강한다.
  - ⑤ 건설기계를 와이어로 끌어당겨 올릴 때에는 주위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2) 운반기계에 건설기계를 적재할 경우 주의사항
- (가) 건설기계를 운반기계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